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관련 협조 요청

- 1. 우리부 업무에 항상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개정으로 '17.5.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가 시행중이며, 동법 부칙 제14218호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17.5.29.이전 자격 취득자)는 시행 후 1년 이내('17.5.30. ~ '18.5.29.)에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응급의료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신고 내용 및 방법은 [붙임] 참고
- 3. 이와 관련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응급구조사의 자격 신고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 드리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내용 -

가. 중앙행정기관

- ㅇ 소속 직원 중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의 신고 독려
- 특히 교도소, 소방서, 해양경비 관련 기관, 교육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산하)기관에도 해당 내용 전달 요청

나. 시·도

- o 소속직원 중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의 신고 독려(시·도청 내 모든 부서에 전달)
- o 관할지역 내 시·군·구청 및 보건소에 즉시 내용 전달
- o 관할지역 내 응급환자이송업자에게 즉시 내용을 전달하여 소속 인력 중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의 신고 독려

다. 시·군·구청 및 보건소

- o 소속직원 중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의 신고 독려(시·군·구청 내 모든 부서에 전달)
- o 관할 지역 내 의료기관에 즉시 내용을 전달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중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의 신고 독려

라. 대학교(응급구조학과), 2급응급구조사 양성기관

ㅇ 해당 기관의 졸업생에게 즉시 내용을 전달하여 응급구조사 자격보유자의 신고 독려

마.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병원, 대학병원, 병원협회, 응급구조사 협회 등 기타 기관

ㅇ 응급구조사 자격보유자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신고 독려

붙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끝.

보건복지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 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 수신자 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금융 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원자력 안전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 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 계청장, 농촌진흥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장, 특허청장, 기상청장, 새만금개발청장, 소방청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해양경찰청장, 서울 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 인천광역시장(보 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식의약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보건장애인과장), 경기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기도지사(보건위생담당관), 강원도 지사(공공의료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 장), 전라남도지사(보건의료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제주특별자 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국립부산검역소장, 국립인천검역소장, 국립군산검역 소장, 국립목포검역소장, 국립여수검역소장, 국립마산검역소장, 국립김해검역소장, 국립통영검역소장, 국 립울산검역소장, 국립포항검역소장, 국립동해검역소장, 국립제주검역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사회보장정보 원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국립중앙의료원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국립암센터원장, (재)한국장애인 개발원장, 한국보육진흥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한국보건의료연구 원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한 국장기기증원장, 한국인체조직기증원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한약진흥재단원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질병관리본부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 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목포병원장,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서울대학 교병원장, 부산대학교병원장, 경북대학교병원장, 전남대학교병원장, 충남대학교병원장, 충북대학교병원장, 전북대학교병원장, 강원대학교병원장, 제주대학교병원장, 응급구조학과장,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장

7018.4.29 주무관 행정사무관 응급의료과장 **박재찬**

협조자

시행 응급의료과-2605 (2018. 4. 29.) 접수 119구급과-2604 (2018.04.30.)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554 팩스번호 044-202-3938 / kjh0414@korea.kr / 비공개(5)